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30526 <http://www.nail4season.co.kr/>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23.04.11.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3.12.18. kky@tnylab.co.kr

[네일포시즌(NAIL4SEASON)]

정 보 공 개 서

[네일포시즌]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 . . .

[네일포시즌]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9길 8, 3층(서교동)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02-332-3232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없음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02-332-3232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을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http://ftc.go.kr/data/hwp/20080306_103723.hwp)
(<http://www.ftc.go.kr/laws/laws/laws.jsp?lawDivCd=08>)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네일포시즌	네일포시즌 (NAIL4SEASON)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9길 8, 3층(서교동)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개인사업자	2018.04.17.	서상이	02-332-3232	없음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288-79-00192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대표	서상이	네일포시즌 (NAIL4SEASON)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9길 8, 3층(서교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서상이	02-332-3232	없음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이사)	강근영	네일포시즌(NAIL 4SEASON)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9길 8, 3층(서교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서상이	02-332-3232	없음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네일포시즌(NAIL4SEASON)]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네일포시즌	

	(NAIL4SEASON) 네일포시즌 (NAIL4SEASON) OO점	
상 호		
상표(서비스표)		등록 40-1648141-0000
로 고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이하 절삭,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369,884	38,787	331,097	569,067	-91,849	35,044
2022년	279,395	28,028	251,367	704,078	-91,623	-81,788
2023년	216,359	119,295	97,063	530,613	-179,215	-176,701
그 근거자료는 별첨 1과 같습니다.						

※ 별첨1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없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서상이	대표	2018.04 ~ 현재	대표	회사 총괄
관련임원	강근영	이사	2018.04 ~ 현재	이사	가맹사업 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2	-	13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 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NAIL 4 SEASON (서비스표)	가맹점 운영 및 상표 사용료 수수	출원 2018.07.13. 등록 2020.10.05.	출원 40-2018-0096212 등록 40-1648141-0000	강근영	2030.10.05. (2025.03.01.)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 검색서비스 (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네일포시즌(NAIL4SEASON)] 가맹사업 현황

1. [네일포시즌(NAIL4SEASON)] 를 시작한 날 : 가맹계약체결 사실 없음
(직영점을 시작한 날: 2018 년 4 월 17일)

2. [네일포시즌(NAIL4SEASON)]의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네일포시즌	네일포시즌 (NAIL4SEASON)	서상이	가맹사업 예정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9길 8, 3층(서교동)

3. [네일포시즌(NAIL4SEASON)] 업종

영업표지	업종	
네일포시즌(NAIL4SEASON)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이미용	네일, 손톱, 발톱 미용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네일포시즌(NAIL4SEASON)] 가맹점¹⁾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	-	1	1	-	1	1	-	1
서울	1	-	1	1	-	1	1	-	1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	-	-	-	-	-	-	-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1) 당사는 2023년 말 직영점을 제외한 3개의 매장을 운영 중에 있으나 모두 상표사용 계약으로 운영되고 있는 형태이며, 원장들과 협의하여 가맹계약으로 전환을 동의하는 매장이 있다면 전환할 예정임.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네일포시즌(NAIL4SEASON)] 가맹점 수²⁾

(단위: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	-	-	-	-	-
2022	-	-	-	-	-	-
2023	-	-	-	-	-	-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네일포시즌(NAIL4SEASON)]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현황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 [네일포시즌(NAIL4SEASON)]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당사는 2023년 말 직영점을 제외한 3개의 매장을 운영 중에 있으나 모두 상표사용 계약으로 운영되고 있는 형태이며, 원장들과 협의하여 가맹계약으로 전환을 동의하는 매장이 있다면 전환을 할 예정임.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한 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신한은행	합정역 지점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473	02-3142-5700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신한 은행]에 [계약 체결 당일까지] 예치 신청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또한 [신한 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네일포시즌(NAIL4SEASON)]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계약이행보증금	가맹본부	예치하지 않음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확정 금액
기타 비용	당사 또는 해당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22,000				
가 맹 비	영업비밀 전수	계약체결 일에 예치	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지 / 소멸되지 않는 비용에 한정	매뉴얼 제공 후 소멸	최초계약 기간에 한 限
	점포오픈 시 업무지도			오픈 시 소멸	

2) 계약이행보증금은 다음 표와 같으며,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제출로 같음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5,000]			
계약이행보증금	5,000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미지급 채무액, 손해배상 예정 등의 담보	이행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체

※귀하는 보증보험 증권원본을 최초 계약 및 계약갱신 시 2년 단위로 당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네일포시즌(NAIL4SEASON)]를 운영하기 위해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보증금을 제외하고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합계		22,000
가맹비	영업비밀 전수비	16,500
	점포오픈 시 업무지도	5,5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 조건	비고
총계		110,000	2,200			165㎡ (50평)기준
인테리어 (의탁자 포함)	자율	99,000	1,980	개별 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간판	자율	5,500	110			
초도 물품 등	당사	2,200	44	주문 2일 전	주문 취소 시	
기자재	자율	3,300	66	개별 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1. 상기 표에서 초도 물품 등을 제외하고는 귀하가 직접 시공하거나 구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인테리어 시공도 귀하가 직접 시공하는 것을 당사는 권장하며, 이 경우 귀하는 **감리비로 매 금오백오십만원(₩5,500,000-부가세 포함)을 당사에 시방서 또는 도면 제공일에 선지급하여야 합니다.**

※3.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점포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인테리어 금액에서는 냉난방기, 전기승압, 화장실, 외부 테라스 등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담당자 배정 → 가맹희망자와 희망 점포 답사 → 현장 확인 → 담당

또는 가맹점사업자	자의 상권현황 설명 및 영업지역 중복여부 확인 → 가맹희망자 면담 → 가맹희망자가 최종 결정
--------------	--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당사의 교육을 이수할 자질을 가진 자	만20세 이상이며, 당사의 기준에 따른 매장임차가 가능한 자
종업원	당사의 교육을 이수할 자질을 가진 자	미용(네일) 자격을 취득한 자, 경력 3년 이상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8) 한편, 귀하는 당사에 가맹금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광고 분담금	당사	아래※1 참조	광고 시행 전 별도 통지	광고 미시행	광고 시행 후	
판촉 분담금	당사	행사별로 분담	판촉 시행 전 별도 통지	판촉 미시행	판촉 시행 후	
교육비	당사	실비부담	별도통지	교육 미실행	교육 실시 후	
로열티	당사	순매출액의 20%	익월 5일	기간 경과 전	기간 경과 후	AD스페이스 제공시 면제
물품 등	당사	실주문 가액	선금 지급	주문 전	주문 후	
점포 환경개선	해당 인테리어 업체	당사 분담 비용 제외한 나머지	협의	해당업체와 의 계약에 따름	해당업체와 의 계약에 따름	아래※3 참조

지연이자	당사	연1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급기간 경과 후 익일부터 부담
[※1. 광고분담금은 브랜드 광고의 경우 당사와 가맹점사업자들이 50:50으로 부담하며, 브랜드 광고 + 가맹점모집광고는 당사와 가맹점사업자들이 60:40, 가맹점모집광고는 당사가 100% 부담합니다. 다만, 가맹점 50호점까지는 당사가 부담합니다.] [※2. 당사의 분담은 ①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은 경우 발생비용의 20% ②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발생비용의 40% 이며, 점포환경 개선 시 귀하가 보수 종료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계약이 종료·해지·영업 양도할 경우 36개월의 기간 중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미상각잔액을 당사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당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추가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현재의 거래조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으로 일부 가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귀하는 일부 가맹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네일포시즌(NAIL4SEASON)]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가맹점운영권 양도 시 원칙은 포괄적 양수도이며, 양수인은 가맹비 중 일부와,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이행보증권을 당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25]쪽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귀하는 가맹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아래의 조치를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취해야 합니다.

가. 귀하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네일포시즌(NAIL4SEASON)” 브랜드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식별 기호도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나. 귀하는 “네일포시즌(NAIL4SEASON)” 노하우 사용을 즉시 중지합니다.

다. 매뉴얼, 기타 당사로부터 대여 받았거나 제공받은 문서·도면·기타 도서
전부를 모든 사본과 함께 당사에게 반환하거나 당사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서 처분하여야 합니다.

라. 귀하는 “네일포시즌(NAIL4SEASON)” 운영 중 취득한 고객 정보의 DB를
모두 당사에게 이관하여야 하며, 계약종료 이후 고객 정보의 사용에 관하
여는 귀하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조치의무를 취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네일포시즌(NAIL4SEASON)]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당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네일포시즌(NAIL4SEASON)]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네일포시즌(NAIL4SEASON)]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당사가 [네일포시즌(NAIL4SEASON)]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별첨 3 참고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이용시간은 협의 후 변경 가능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계약 체결 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가맹계약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원)	가격통보 방법	비고
별첨 3 참고	별첨 3 참고	홈페이지 또는 공문을 통해서 공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반드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당사는 귀하에			

게 불이익을 가할 수 있습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계약 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 · 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네일 상품 판매 또는 네일 서비스를 판매하는 업종	네일포시즌(NAIL4SEAS ON)	해당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가. 점포반경 500m를 원칙으로 가맹계약서 별첨에 기재 다. 다만, 아래의 기준에 따른 특수 상권의 경우는 예외 ① 주차장을 제외한 연면적 4,950㎡ 이상의 각종 학교, 관공서 ② 주차장을 제외한 연면적 6,600㎡ 이상의 KTX역사, SRT역사, 지하철 지하상가 ③ 주차장을 제외한 연면적 9,900㎡ 이상의 백화점, 쇼핑센터, 마트, 놀이시설	가맹계약서의별첨으로 영업지역 표시

[당사는 상기의 영업지역의 설정기준을 바탕으로, 개별 매장에 대한 영업지역은 협의하여 결정한 후 가맹계약서에 별첨을 합니다. 또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3) 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의를 구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네일포시즌(NAIL4SEASON)]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네일포시즌(NAIL4SEASON)]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당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	100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	-
당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계약 및 갱신 기간

[네일포시즌(NAIL4SEASON)]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계약의 갱신 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2]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 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 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 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 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 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계약 체 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귀하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기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당사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당사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	제36조 제1항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는 귀하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서를 함께 참고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귀하가 제21조 제1항 각호를 위반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귀하가 제3조 제3항, 제5항, 제6항을 위반한 경우 - 귀하가 제8조 제1항 전단의 이행보증보험 증권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후단의 갱신된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 귀하가 제9조 각항을 위반한 경우 - 귀하가 제10조를 위반하여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없이 경업을 한 경우 - 귀하가 제12조 제1항에 따른 가맹본부의 정당한 시정요구를 6개월에 2회 이상 위반하거나 제3항을 위반한 경우 - 귀하가 제18조 제1항 전단, 제2항 내지 제4항, 제6항, 제7항을 위반한 경우 - 귀하가 제20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 귀하가 제23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 - 귀하가 제25조 제1항, 제3항을 위반한 경우 - 귀하가 제26조 제1항의 전단을 위반하여 가맹본부의 시방서 또는 도면없이 임의로 시공하거나 제2항의 감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 귀하가 제28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 귀하가 제30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 귀하가 제40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개점승인 없이 영업을 개시한 경우 - 귀하가 본 계약 상 금전 지급의무를 년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 고객의 개인 정보를 고객과의 계약내용 또는 법령의 허용범위 이외로 사용하거나, 고객의 동의 없이 가맹본부를 제외한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제31조 제1항

- 고객의 컴플레인 발생 시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연속하여 3회 이상 취하지 아니하거나, 연 4회 이상 고객에게 반복적인 컴플레인이 제기되는 경우 - 기타 본 계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귀하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귀하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귀하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귀하가 점포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귀하가 제24조 제3항에 따른 당사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귀하가 점포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제31조 제2항

○ 귀하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환매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1개월 전에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양도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았을 경우 추가로 보증금과 가맹비 중 일부, 최초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 계약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 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수 없습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

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 시	모든 권리의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협의	상속인이 미용사 자격보유 必
대리행사	불가능		-	
업무위탁	불가능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동일 지역 내에서] 귀하가 [네일포시즌(NAIL4SEASON)]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u>가맹점 영업활성화를 위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경우, 동종 업종 중 특정 브랜드와의 경업을 허용할 수 있으며</u> 귀하는 당사가 사전에 승인한 브랜드에 한해서 경업의무가 면책됩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 네일 상품 판매 또는 네일 서비스를 판매하는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네일포시즌(NAIL4SEASON)]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0:00 ~ 22:00 (상관별로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주5일 이상 영업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5일 이상 휴업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대하여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은 즉시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네일포시즌(NAIL4SEASON)] 의 종업원 및 근무형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종업원 수	직접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10명 이상	직접 근무가 원칙	당사의 교육을 모두 이수한 직원	
--------	-----------	-------------------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네일포시즌(NAIL4SEASON)]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브랜드 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중에 따라 산정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가맹점 50호점까지는 당사가 모두 부담함
	브랜드 광고+가맹점 모집광고	광고비의 60%	광고비 4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개별 행사	가맹점사업자 부담			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종료후 최종 분담금 확정	월별 판촉 행사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광역단위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 · 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브랜드 이미지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 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당사는 귀하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귀하에게 위약벌금과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 위약금 규정에 관하여는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34조, 제35조를 본 정보와 비교해 가면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귀하는 아래 각호의 경우 당사에 직전 3개월 평균 월매출액의 20% * 잔여개월수 * 100%를 가맹본부에 위약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운영을 한 경우 가맹비로 위약금을 산정을 대체합니다.

- 1) 귀하가 제3조 제3항, 제5항, 제6항을 위반한 경우
- 2) 귀하가 제9조 각항을 위반한 경우
- 3) 귀하가 제10조를 위반하여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경업을 한 경우
- 4) 귀하가 제12조 제1항에 따른 당사의 정당한 시정요구를 6개월에 2회 이상 위반하거나 제3항을 위반한 경우
- 5) 귀하가 제18조 제1항 전단, 제2항 내지 제4항, 제6항, 제7항을 위반한 경우
- 6) 귀하가 당사와 사전 합의없이 제23조의2 제1항, 제2항 전단을 위반한 경우
- 7) 귀하가 제26조 제1항의 전단을 위반하여 당사의 시방서 또는 도면없이 임

- 의로 시공하거나 제2항의 감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 8) 귀하가 제28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 9) 귀하가 제40조 제3항 위반하여 개점승인 없이 영업을 개시한 경우
 - 10) 귀하가 본 계약 상 금전 지급의무를 년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 귀하는 아래 각호의 경우 당사에 직전 3개월 평균 월매출액의 20% * 잔여 개월수 * 50%를 가맹본부에 위약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운영을 한 경우 가맹비의 50%로 위약금을 산정을 대체합니다.

- 1) 귀하가 제8조 제1항 전단의 이행보증보험 증권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후단의 갱신된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 2) 귀하가 제23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
- 3) 귀하가 제25조 제1항, 제3항을 위반한 경우
- 4) 귀하가 제30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 5) 귀하가 제39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
- 6) 고객의 개인 정보를 고객과의 계약내용 또는 법령의 허용범위 이외로 사용하거나, 고객의 동의 없이 당사를 제외한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 7) 고객의 컴플레인 발생 시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연속하여 3회 이상 취하지 아니하거나, 연 4회 이상 고객에게 반복적인 컴플레인이 제기되는 경우

○ 귀하는 가맹계약 제2조의 당사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에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계약의 종료 후 가맹계약서 제33조 제2항을 위반할 경우 귀하는 침해일 익일부터 위반사항 시정일까지 매1일 당 금삼십만원 (₩300,000)을 위약벌금으로 당사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 귀하가 당사와 합의없이 AD 스페이스의 활동행위를 침해하거나 가맹계약 제31조를 위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 중도 해지를 할 경우 위약벌금으로 금이천 이백만원(₩22,000,000)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당사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는 귀하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56일 내외	11~12 Page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55	
사업 설명·상담	- 가맹희망자 상담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D-54~53	
영업지역 선정협의	- 필요 시 입지 주위 정보 제공	D-52~48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47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46	
가맹금 예치	- 예치가맹금 예치		22,000
점포실측/설계	- 간판 시안 및 도면제공	D-45~39(7일)	11~12 Page 참조
인테리어 공사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38~37(2일)	
	- 공사 실시	D-36~6(3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공사 기간 중	
가오픈	- 점포 오픈 최종리허설	D-5~2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평균적인 기간을 작성한 것으로써, 협의 과정 또는 점포의 형태, 협의진행 업무,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가감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 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네일포시즌(NAIL4SEASON)]의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각종 집기·장비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노후시설 보수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노후시설 보수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선이 끝난 날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한 경우 : ※1참조 <분할지급 시 절차> ○ ※2 참조	○점포환경개선선이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2.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 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경영 지도	① 개업에 관한 모든 업무의 지도 및 원조 ② 기자재의 설치, 그것의 개선이나 운전에 관한 지도업무 ③ 교육 프로그램 및 관리업무에 관한 지도 ④ 가맹점 운영에 따른 제반 문제점 발생 시 그 해결을 위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 계획서 또는 인력파견 통지(경영지도내용, 기간, 인력파견 현황,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결과 제시 또는 인력 파견 결정	가맹본부 필요 시 가맹점사업자와 협의 또는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가맹점사업자 부담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네일포시즌(NAIL4SEASON)]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최초 교육	8시간 *1일	무료	점심시간 제외
수시 교육	상황에 따라 다름	실비	1인당 비용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계약을 맺는 당사자 및 직원이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당사가 통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서울	본점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9길 8, 3층(서교동)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비 고
약 5년 9개월 (2,084일)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별도)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 고
530,613	세금 신고 기준

별첨1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별첨2 영업표지를 보호하고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 등

별첨3 상품 등의 목록 및 권장 가격

별첨4 가맹금 예치 신청서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02-332-3232)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239 ~ 4241) 또는 가맹거래과 (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1 -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1 -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1 -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1 -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2 영업표지를 보호하고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상기에 기재된 물품 등은 경제여건의 변화, 신상품 출시, 공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에 공지하며, 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준수하여야 함

[별첨3 상품 등의 목록 및 권장 가격]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상품 · 용역명		권장 소비자가	비고
구분	상품명		
HAND	케어 + 영양	15,000	● 모든 시술은 케어 포함가입니다. ● 현금/카드 동일가입니다. ● 남성은 5,000원 추가입니다.
	젤컬러	29,000	
	프렌치(기본)	45,000	
	프렌치(변형/딥)	55,000	
	그라데이션	45,000	
	이달의 아트	A 45,000 B 55,000 C 65,000	
PEDI	케어 + 영양	20,000	
	젤컬러	39,000	
	프렌치(기본)	55,000	
	프렌치(변형/딥)	65,000	
	그라데이션	55,000	
	이달의 아트	A 55,000 B 65,000 C 75,000	
OPTION	컬러추가 / 변경	5,000	
	펄컬러 추가(5개 미만)	5,000	
	펄컬러 추가(전체)	10,000	
	스톤(크기별 상이)	1,000 ~ 5,000	
	스왈파츠(크기별 상이)	10,000 ~	
	글리터 추가(5개 미만)	10,000	
	글리터 전체 추가	20,000	
	자석젤 추가(1ea)	3,000	
	파우더 추가(1ea)	3,000	
	포인트 아트(1ea)	5,000 ~	
	스티커 / 데칼(1ea)	3,000 ~	
	랩핑(1ea)	7,000	
	연장(1ea)	12,000	
	연장 전체	100,000	
	자삭 젤제거(1ea)	1,000	
	타삭 젤제거(1ea)	2,000	
	타삭 젤제거(1ea) (연장/풀파츠/하드젤)	3,000	

※ 상기의 상품명 또는 권장가격은 당사의 정책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며, 가맹 계약 체결 시 협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별첨4 가맹금 예치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08.1.31>

(앞 쪽)

가맹금예치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가맹점)명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가맹 본부	상호명(영업표지)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예치가맹금		₩ (금 원 정)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의 계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금을 예치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귀하 지점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정보공개서 제공에 대한 수령 확인서

(가맹본부 용)

가맹희망자

성 명 : (인 또는 사인)
주 소 :
생년월일 :
연 락 처 :

가맹본부

업 체 명 : 네일포시즌 대표 서상이 (인)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9길 8, 3층(서교동)
브랜드명 : 네일포시즌(NAIL4SEASON)
연 락 처 : 02-332-3232

1. 본인은 “가맹본부”로부터 아래의 각 사항이 명시된 정보공개서를 202 년 월 일 가맹본부의 사무실(실재교부장소)에서 서면(교부방법 기재)으로 교부받아 정보공개서 전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 (1) 네일포시즌(NAIL4SEASON) 정보공개서 최종등록일 : 20 년 월 일
(2) 네일포시즌(NAIL4SEASON) 정보공개서 목차
가.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나.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다. 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범위반사실
라.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마.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바. 가맹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사.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아. 교육·훈련프로그램

2. 본인은 정보공개서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대리인으로 부터 충분히 설명 받았습니니다.

① 그렇다 ☐ ②그렇지 않다 ☐

본인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수령하는 경우에 귀사의 영업비밀 또는 사업에 대한 중요사항을 유출 또는 제3자에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본인이 모두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정보공개서 제공에 대한 수령 확인서

(가맹희망자 용)

가맹희망자

성 명 : (인 또는 사인)
주 소 :
생년월일 :
연 락 처 :

가맹본부

업 체 명 : 네일포시즌 대표 서상이 (인)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9길 8, 3층(서교동)
브랜드명 : 네일포시즌(NAIL4SEASON)
연 락 처 : 02-332-3232

1. 본인은 “가맹본부”로부터 아래의 각 사항이 명시된 정보공개서를 202 년 월 일 가맹본부의 사무실(실재교부장소)에서 서면(교부방법 기재)으로 교부받아 정보공개서 전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 (1) 네일포시즌(NAIL4SEASON) 정보공개서 최종등록일 : 20 년 월 일
(2) 네일포시즌(NAIL4SEASON) 정보공개서 목차
가.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나.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다. 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범위반사실
라.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마.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바. 가맹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사.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아. 교육·훈련프로그램

2. 본인은 정보공개서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대리인으로 부터 충분히 설명 받았습니니다.

① 그렇다 ☐ ②그렇지 않다 ☐

본인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수령하는 경우에 귀사의 영업비밀 또는 사업에 대한 중요사항을 유출 또는 제3자에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본인이 모두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인근가맹점 현황 제공확인서]

가맹희망자

성 명 : (사인 또는 날인)
주 소 :
생년월일 :
연 락 처 :

가맹본부

업 체 명 : 네일포시즌 대표 서상이 (인)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9길 8, 3층(서교동)
브랜드명 : 네일포시즌(NAIL4SEASON)
연 락 처 : 02-332-3232

1. 본인은 가맹본부에게 아래와 같이 계약체결 예정지 인근 가맹점현황 리스트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구분		수령여부	
		수령날짜	확인
점포예정지 확정 시	정보공개서와 동시수령		
점포예정지 미확정시	점포 확정 후 정보공개서와 별도로 추후 수령		

2. 인근 가맹점 현황

No	가맹점 상호	주소	전화번호	비고
1				
2				
3				
4				
5				
6				
7				
8				
9				
10				

202 년 월 일